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00

발의연월일: 2022. 9. 7.

발 의 자:김상훈·지성호·박 진

유경준 • 이종배 • 권성동

송언석 · 김학용 · 노용호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상제작자가 이러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때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의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영상콘텐츠 사업은 관광·상품수출 및 국가이미지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게임 산업은 차세대 핵심 문화산업이자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수출의 약 67%를 차지하는 산업으로서 그 홍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홍보 영상의 제작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 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게임물"로, "상영된"을 "상영되거나 제공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 | 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u>2022</u> | <u>202</u> |
| <u>년 12월 31일</u> 까지 다음 각 호 | 4년 12월 31일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 |
|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방</u> | |
| 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 <u>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게</u> |
|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 | <u>임물</u> |
| 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 |
|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 |
|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 | |
| 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 | |
| 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 |
|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 |
| 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 | |
| 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
| 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 | |
| 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 |
| <u>상영된</u> 과세연도의 소득세(사 | |
| 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 <u>상영되거나 제공된</u> |
| 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 | |

| 다. | |
|--------------------|------------------|
| | |
|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 |
| | 임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
| | 는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영 |
| | <u>상물</u>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